경운대학교 Digital정보원 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규정에 의거 Digital정보원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① Digital정보원(이하 "정보원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디지털 정보화 사업기획 및 평가
2. 대학의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정보화 지원
3. 학사·행정·입시 등 관련 업무의 정보화 지원
4. 교내·외 디지털 교육 기획 및 운영
5. 디지털정보 기술의 연구 및 개발
6. 학내 주요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
7. 대학 전산망(교내·교외) 구축·운영 및 관리
8. 학내 정보통신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관련 업무
9. 기타 대학 정보화 및 정보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

제2장 조 직

제3조(구성) ① 정보원에는 원장, 센터장, 행정·기술직원, 실습조교를 두며,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센터와 Digital교육센터를 둔다.

② 원장은 경운대학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정보원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

③ 전산정보센터는 정보자원의 관리, 정보시스템·전산망 구축 및 운영, 학사·행정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와 각종 정보화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업무, 정보보호(정보보안, 개인정보보호)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등을 분장한다.

④ Digital교육센터는 대학 내·외 디지털 교육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업무, 대학 내 컴퓨터 실습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, 공동 사용 교육용 소프트웨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등을 분장한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정보원의 업무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6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5조(운영위원회 기능) 운영위원회는 정보원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4장 재 정

제6조(재정) 정보원의 재정은 교비, 기부금 및 보조금,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.

제7조(회계 및 회계연도) 정보원의 회계 및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 예산회계규정 및 회계연도를 따른다.

제8조(기타) ① 원장은 디지털 교육 관련 강좌 개설에 등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수강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수강료 징수 등 수입금 사용에 관한 사항은 경운대학교 회계관리 규정을 따른다.

④ 원장은 수강료 등 수입금 사용에 따른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⑤ 원장은 전항의 예산집행에 따른 결산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<2022.09.01.>

1. **(시행일)**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